

제307회 임시회
2012.03.12.(월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03.12.(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02월 23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0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03월 07일

(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구명회)

가. 제안이유

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및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「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」을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자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"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"을 설치함(안 제31조의7)
-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함(안 제31조의8)
-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(안 제31조의9)
 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 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 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
 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를 위해
- 현행 조례에 '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'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1절(제31조의7, 제31조의8, 제31조의9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

제31조의7(설치) ① 법 제32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(이하 “유아교육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-122에 둔다.

제31조의8(원장)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9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
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<p>제31조의7(설치) ① 법 제32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(이하 “유아교육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-122에 둔다.</p>
<u><신설></u>	<p>제31조의8(원장)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
<u><신설></u>	<p>제31조의9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.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
현행	개정안
	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[법률 제10866호, 2011. 7. 21, 일부개정]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유아교육법[법률 제10913호, 2011. 7. 25, 일부개정]

제6조(유아교육진흥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0.3.24>

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3.24>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제22698호, 2011. 3. 7, 일부개정]

제23조(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·교육규칙의 입법예고)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·교육규칙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<개정 2008.2.29>

[본조신설 2006.6.29]